의정부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- 3호

2026년 제1회 의정부시의회
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제1회 의정부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의정부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채용직급	인원	근무시간	업무내용	근무부서
의정홍보 (동영상콘텐츠 촬영제작 및 의사중계 시스템운영 등)	시간선택제 임기제 "다"급	1명	주 35시간	○ 주요 행사 동영상 촬영·편집·제작 ○ 주요 행사 사진 촬영 지원 ○ 의사중계 방송 및 영상송출 지원 ○ 홍보 영상 제작, 유튜브 관리·운영 등	의회사무국 (홍보팀)

※ 근무기간: **임용일부터 1년** (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)

2. 관련 근거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, 제31조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, 제21조의5

다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라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가. 공통요건

1) 지역 및 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)

2) 연령: 18세 이상

3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4)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□ **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**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

① **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**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**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**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□ *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① **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**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**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**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나. 임용분야에 따른 자격요건 ※ 적용기준일: 면접시험(예정)일

직급	자격 기준
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다”급	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, 아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.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학위: 신문방송학, 방송영상학, 미디어영상학, 디지털미디어학 등 영상 제작 관련 학과 2.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이상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*【필수조건(모두 충족 필수)】** **① 영상·사진 촬영기기 및 영상·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** **②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증(2종 보통 이상)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** **③ 업무 특성상 토·일(공휴일) 및 주·야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** **【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】** **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기업, 민간기업(프로덕션, 광고·홍보대행사 등), 방송국 등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포함한 영상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경력**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해 영상 촬영 및 편집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※ 사진 촬영·편집 등 사진 관련 업무만을 수행한 경력은 직무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**【편집 프로그램】** **프리미어 프로, 애프터 이펙트, 포토샵** **【※제출사항】** **지원자가 직접 제작·편집한 영상을 3분 내외의 분량으로 편집하여 USB로 제출 (공동제작의 경우 지원자가 참여한 부분을 특정하고 참여한 내용과 그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)**

- 시간제 근무 경력은 근무시간(주 40시간)에 비례하여 인정
-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 (자격 · 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)

❍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❍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 관련 자격증,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
❍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 (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❍ 평가요소

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❍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❍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◈ **불합격 기준**
- 면접위원의 **과반수가**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**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**
- 면접위원의 **과반수가** 어느 하나의 **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**
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◈ **추가 합격자 결정**: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**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**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**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**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**차순위 평정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**할 수 있음

◈ **재공고**: 응시인원이 **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**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함(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

5. 보수 수준

구 분	연봉액	산출기초
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다” 급	43,988천 원	임기제공무원 “7급 상당” 기준 연봉 하한액(50,272천원)을 근무시간 비례하여 산출

※ 상기 봉급액 외에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※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1항)

6.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

❍ **접수기간**: 2026. 11. 23.(월) ~ 11. 27.(금), 09:00 ~ 18:00

※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
❍ **접수방법**: 방문 접수(대리접수 가능) 및 등기우편 접수

※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

등기우편 접수 안내
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, 등기우편 발송 시 도착 예정일자 등을 확인 후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☏ 031-828-2523, 행정팀 채용담당자)

  ※ 등기우편 접수 주소: (11622)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, 의정부시의회 행정팀 채용담당자 앞

-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**통상환증서**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※ 받을 분 기재금지(우편업무가 아닌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에 유의) ※ **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**

-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.

-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*봉투 겉면에 반드시 “응시원서”라고 기재하여 송부

❍ 접수처: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팀(의정부시 의정로 41, 3층)

〈청사 배치도〉	〈 의정부시의회 위치 〉
	

7. 시험일정

구 분	기 간
원서 접수	2026. 11. 23.(월) ~ 11. 27.(금), 09:00 ~ 18:00 * 중식시간(12:00 ~ 13:00) 제외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6. 12. 8.(화) 예정
면접시험	2026. 12. 15.(화) 전·후
최종 합격자 발표	2026. 12. 21.(월) 예정
임용예정시기	2027. 2월 중

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
※ https://www.ujbcl.go.kr 접속 → 의회소식 → 채용공고

◈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

8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고
1.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1호서식)	ㅇ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*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**-(방문접수) 의정부시청 민원여권과(본관 1층) 경유하여 수입증지 첨부 후 의정부시의회 의회사무국 행정팀에 제출** **-(우편접수) 우편통상환 구입·동봉 후 발송(받을 분 기재금지)** ※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※ 수수료: 7천원	필수
2. 이력서 1부 (별지 제2호서식)	ㅇ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(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)	필수
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3호서식)	ㅇ A4용지 2매 이내	필수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4호서식)	ㅇ A4용지 5매 이내	필수
5. 경력(재직) 증명서 (별지 제5호서식)	ㅇ **담당업무, 근무기간, 주당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해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포함한 영상 제작 업무 수행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** - 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필수 ㅇ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**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**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**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**해야 함 **※ 제출된 증명 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**	필수
6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)	ㅇ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(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 -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-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	필수
7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(별지 제6호서식)	ㅇ 해당 자격요건 체크 표시	필수

구 분	내 용	비고
8. 동의서 (별지 제7호서식)	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	필수
9.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(별지 제8호서식)	ㅇ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-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	해당자
10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	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 증명서 제출 **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**	필수
11. 증빙서류	ㅇ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(원본 지참) ⇨ 해당자 ㅇ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(원본 지참) ⇨ 필수 ㅇ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(원본 지참) ⇨ 해당자	필수/ 해당자
12. 주민등록초본	ㅇ 주민등록초본 1부(현재 주소만) 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	필수
13. USB	ㅇ 지원자가 직접 제작·편집한 3분 내외 영상 ⇨ 공동제작의 경우 참여한 부분 특정하고 참여한 내용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	필수
※ 주의사항	ㅇ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, 클립, 플래그(띠지) 등 사용 금지 ㅇ 모든 증명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ㅇ 모든 증명 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함.	

9. 그 밖의 사항

❍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❍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❍ 응시원서 등을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하거나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❍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예) 기준: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

○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(연장)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,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
○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○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(선발)할 수 있습니다.

○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결격사유 조회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제규정을 적용합니다.

○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.

○ (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) 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.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○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(https://www.ujbcl.go.kr) **채용공고** 란에 공고합니다.

○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► 임용절차 관련 문의 : 의회사무국 행정팀 (☎ 031-828-2523)

► 담당업무 관련 문의 : 의회사무국 홍보팀 (☎ 031-828-2542)